

문서번호	청소년담당관-3119
결재일자	2015.3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청소년상담팀장	청소년담당관



2015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계획

2015. 3

평생교육정책관
[청소년담당관]

2015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계획

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대시민 계도 및 민·관 합동 단속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I 합동단속 개요

□ 추진근거

- 행정자치부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추진계획 <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-1020호(2015.02.17)>

□ 추진 배경

- 학교 주변 유흥·단란주점등 유흥업소와 모텔·여관 등 숙박시설의 밀집화에 따른 교육환경 피해우려
- '15년도 개학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해(불법)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행정조치 필요

□ 기간 및 점검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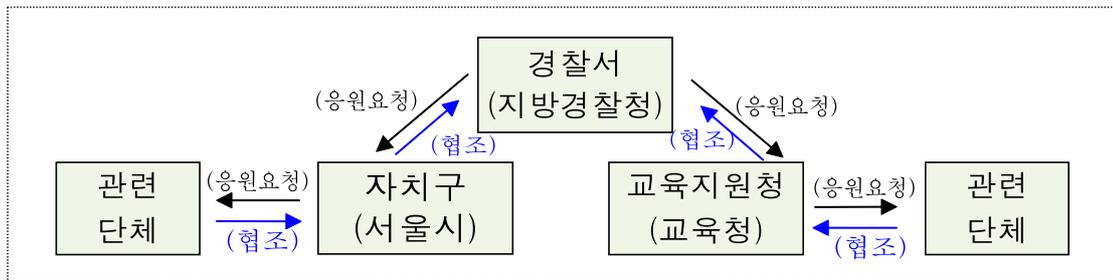
- 단속기간 : '15. 3. 6 ~ 3. 20(약 2주간)
- 단속방법 : 경찰청, 자치구, 교육지원청,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편성·운영
 - 자치구 : 자체단속계획 수립 및 합동단속 참여, 홍보활동 등
- 점검대상 : 학교정화구역(학교경계선 200m 이내) 및 주변지역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

II 세부 추진계획

□ 단속반 편성 및 주요 점검대상

- 단속반 : 경찰 · 자치구 · 교육청 · 시민단체 등
 - 경찰서 : 점검 · 단속계획 수립,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추진
 - 자치구 : 자체단속계획 수립 및 합동단속 참여, 홍보활동 등

- 교육지원청 : 불법영업 업소 등 정보 제공, 합동단속 참여 등
- ※ 경찰관서별로 단속필요 인력 산정 →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에 협조



○ 점검대상 :

학교정화구역(학교경계선 200m 이내) 및 주변지역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

① 성매매 및 음란·퇴폐 행위

-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·음란·퇴폐 영업 행위
- 키스방, 대딸방, 전립선마사지,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
- *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-30호(2011.7.6.)

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

-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
- ※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-인쇄처-배포처 등 계도 및 단속
- *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-34호(2010.11.29)

③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 의무 위반

- 비디오방,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
- 청소년 노래방, PC방,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
- * 출입제한시간 : 청소년노래방 및 PC방(22:00~09:00), 찜질방(22:00~05:00)
- 호프·카페, 숙박업,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

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

- 청소년대상 술·담배, 유해매체, 유해약물 판매 등

- 사후처리 : 합동단속 결과, 위법사항 확인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·영업정지·허가취소 등 엄정한 행정적 제재 추진

□ 신변종 업소 정비

○ 민-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변종 업소 정비

- 관내 경찰서·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상시적인 신변종 업소 근절 체계 유지
- ※ (우수사례) 구청-경찰서 간 MOU 체결 및 적극적인 단속·정비 실시로 관내 학교위생 정화구역 신변종 업소 근절

- 학교보건법상 자진철거 명령(제6조),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(제79·80조) 등 다각적인 행정처분 실시
-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 실시

□ 캠페인 및 홍보 추진

○ 캠페인 전개 : 관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시

- 자치구가 중심, 민간 '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' 등 직능(시민)단체와 함께 합동 캠페인 실시
- 관내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지역에서 집중 실시
- 구청장 등의 단속·계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내 관심 제고

- ◆ 국민운동 3단체(바르게 살기, 새마을, 자유총연맹),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사전 캠페인 계획 수립
- ◆ 학교주변 유해업소,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서 가두 캠페인·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,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독려

○ 계도 및 홍보

- 유흥가 입구·교차로 및 학교정화구역 등에 현수막 게시
- 자치구 및 관내 기업체 전광판 표출 등

○ 집중단속기간 동안 관련 민원처리 철저

- 접수사건 경찰 이송 철저, 행정조치 결과의 신속한 통보 등 경찰관서와의 협조 체계 강화

□ 신고체계 구축·운영

○ 관내 국민운동단체, 시민단체에 신고방법 안내(협조공문 발송)

- 각종 직능단체회의 및 단체장회의 등 활용, 안내 및 홍보 등

○ 자치구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창구 마련(새울전자민원 연계)

○ 집중단속기간 동안 관련 민원처리 철저

- 접수사건 경찰 이송 철저, 행정조치 결과의 신속한 통보 등 경찰관서와의 협조 체계 강화

- ▶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, 서울전자민원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자치구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답변 후 필요시 경찰에 이관
- ▶ 민원 발생사항에 대하여 내부 부서 간 이관하는 행위 금지(예: 청소년보호부서 ↔ 식품위생 관련 부서)

III

행정사항

- 자치구별 '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계획' 수립
 - 직능(시민)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 실시 : '15. 3. 6. ~ 3. 20.
-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해 자치단체-교육청-경찰간 비상연락망 공유 (첨부 1)
 - ※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
- 학교폭력대책 지역 추진체계를 활용·논의
 -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합동단속 기간 중에 개최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관련 사항* 논의
 - * 추진계획 협의, 추진상황 점검, 캠페인 추진, 시설철거 추진 등
- 최종실적은 3. 25까지 작성·제출 (첨부 2)
 - 특히 신·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·행정처분, 불건전 광고물 단속, 학교폭력 지역 위원회 개최실적 등을 자세히 기술

첨부 1 **담당부서·담당자 연락망 양식**

구 분		담당과장	담당팀장	담당자
○○구	성명	○○○	○○○	○○○
	전화	▸ (사무실)000-000-0000	▸ (사무실)000-000-0000 ▸ (핸드폰)*****	▸ (사무실)000-000-0000 ▸ (핸드폰)*****
	이메일			
	성명			
	전화			
	이메일			
	성명			
	전화			
	이메일			

※ 담당팀장과 담당자는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할 것

첨부 2 | 보고 양식

○○○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보고

1. 총 괄

구 분	캠페인 개최 회수	주민 신고 건수	단속 건수	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건수(A)	적발사항 조치결과		
					추가 사실 조사중	시정요구 또는 계도 조치	행정 처분
누적	계						
	본청						
	기초						

2. 홍보·캠페인 추진 현황

구 분	홈페이지 배너 설치(곳)	단체장 현장방문(회)	간부 현장방문(회)	플래카드 게시(곳)	전광판 현출(곳)	캠페인 참여인원		
						계	공무원	주민
누적	계							
	본청							
	기초							

3. 적발사항 세부내용

구 분	계 (B)	①신·변종 유해업소 영업행위	②유사성 행위, 성매매	③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	④청소년 출입시간 및 시설기준 미준수	⑤청소년 에게 주류, 담배 판매	⑥불건전 광고물 (간판, 전단 등)	⑦기타
	본청							
	기초							

4.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

구 분	계 (C)	추가사실 조사중	시정요구 또는 계도 조치	행정 처분					
				계	시설 철거 명령	영업 정지	허가/ 등록 취소	과태료	과징금
누적	계								
	본청								
	기초								

5. 주요 추진실적

- 추진실적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재
 - ※ 자치단체장 현장방문, 대규모 캠페인 개최 등
- 특히,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·행정처분, 불건전 광고물 단속, 학교 폭력대책 협의회 개최 실적 등 자세히 기술
-

<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>

1. 총괄

○ 총괄부분에 기재된 내용·수치와 각 파트의 내용·수치가 일치되도록 작성

※ 1. 총괄 '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건수'(A) = 3. 적발사항 세부내용 '계'(B) =
4.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'계'(C)

2. 홍보·캠페인 추진현황

○ 홈페이지, 프레카드, 전광판 현출을 한달 동안 계속하더라도 매주 신규실적에 포함하지 말 것

3. 적발사항 세부내용

○ 신변종 유해업소 내의 유사성행위 알선은 「①신·변종 유해업소 영업행위」란에, 그 외의 장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알선은 「②유사성행위, 성매매 알선」란에 기재

참고 1 불법영업 시설물 철거명령서 (양식)

□ 규격 : 가로 30cm X 세로 45cm

□ 용도 및 효과

- 성매매 단속 통지 후 영업장의 출입문 중앙에 부착
- 업주·출입자(손님 등)에 경고문으로 영업장 폐쇄 효과
- 명령서에 대한 지속적 손상·은닉점검으로 재영업 방지

□ 철거명령서 예시

불법 영업시설물 철거명령

업소명 :

소재지 :

위 업소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즉시 불법 영업시설물을 자진 철거·폐쇄 이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됩니다.

철거명령일 : 20 년 월 일

00 구 청 장

00 경 찰 서 장

※ 이 게시물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영업시설물 철거 등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동의없이 제거하셔도 됩니다.

※ 기타 문의 사항은 00 경찰서 생활질서계 (000-0000), 00구청 특별 사법경찰관실 (000-000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,

참고 2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 공문 [예시]

0 0 구

수신 홍길동 귀하 (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00)

(경유)

제목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요구 알림

1.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.

2.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청담동 00-00호 지하 1층에 아래와 같이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오니, 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00.00까지 우리 구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위반사항

- 청담동 00-00호 지하1층 다방 용도 시설에 속칭 ‘피부관리업(아로마)’이 입주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시설 설치 및 건축법상 무단용도 변경

○ 적발사항

- 2015.00.00 XX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위반으로 적발하여 우리구에 학교보건법에 의거한 강제철거 대상으로 통보

3.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,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철거명령과 병행하여,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, 건물주와 영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0 0 구 청 장